

「2014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음.

1. 제안이유

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,379,960천원으로서, 이중 5건에 616,40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,

○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지출액	예비비 지출사유	비고
대관령 전지훈련장 강풍피해 시설복구	25,000	- 7. 26일 발생 - 피해내용 : 훈련장 휨스92m, 수목 17본	경제체육과
산불예방 헬기 임차료	362,700	- 4개시군(태백,영월,평창,정선) 공동 헬기임차료	산림과
풍수해 보험사업	111,000	- 풍수해보험 수요증가(주택, 온실 가입자 부담금 60% 지원)	안전건설과
AI차단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	53,700	- AI차단 통제초소(1.27~5.30,장평) - 인건비, 급식비, 초소설치비, 운영자재구입 등	농업기술센터
평창대화통합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긴급대책 운영비	64,000	- 7.29일 발생 - 급수차량 임차료, 생수구입, 급식비 등	상하수도사업소

3.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,
- 『지방자치법』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예비비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%이상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창군의 예비비 편성 내역을 보면,
 - 2014년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2,519억중 1.4%인 35억을,
 - 2015년도는 2,823억중 1.5%인 41억을 편성하여 예비비 확보 기준을 충족하였으며,
- 2014년도 예비비집행은 5건에 6억이 지출되었으며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·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도 지적 하였듯이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예산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함에 따라 2016년 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, 기타 예산지출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